

 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3월 31일 조간 (3.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 / 김진형 사무관 / 강택신 사무관 044-201-6750 / 6754 / 6764
	배포일시	2021. 3. 29. / 총 5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 어린이활동공간 납 관리기준 강화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
- ◇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의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설치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부터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 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 국내외 ‘납’ 규제 현황

국가	규제 대상	‘납’ 규제 내용
한국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 포함)	90ppm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미국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 포함)	90ppm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유럽연합	도료	사용 금지
일본	어린이제품 표면코팅	90 ppm (식품위생법)

-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 또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 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진형 사무관(☎044-201-6754), 강택신 사무관(☎044-201-6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납 관리기준 강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관리기준을 現 0.06%(600 ppm)에서 0.009%(90 ppm)으로 강화
 -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 프탈레이트류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합성수지 및 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물질로 지정 (총합량 0.1%)
 - (규제 합리화) 확인검사 합격 이후 시설의 증축 또는 수선 행위가 없어 중금속 농도 변화가 없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유지관리 기준 적용 제외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최근 2년 이내)한 경우*에 「환경보건법 시행령」상 환경안전 관리기준 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인정
- *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기준과 권고 기준에 맞는 경우

②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역할 강화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17개 광역 자치단체는 10년마다 지역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③ 역학조사 등 내실화

-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역학·환경노출평가·인체 독성·보건통계·환경매체 전문가 및 피해질환과 관련된 임상 의사 등 15명 이내로
- 건강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실시 기준 및 방법 개발,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신규시설의 경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면 「환경보건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개정 법령안 시행 이전부터 운영해 온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 기존 시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유예('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유예기간 중 해당 시설의 환경유해인자(납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실태 파악을 위한 환경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첫 지역환경보건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는지?

-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기한은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또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환경부에서 작성 지침서를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4.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지?

- 환경보건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 역학(疫學) 전문가, 환경노출평가 전문가, 인체독성 전문가, 환경피해대상 질환과 관련 임상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1.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됨

2.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료,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별표2])에 규정

<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구분		관리 기준
도료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납 : 600mg/kg 이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실내공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폼알데하이드 : 80μg/m³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μg/m³이하
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 ③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④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바닥재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 200mg/kg 이하 · 카드뮴 : 4mg/kg 이하 · 비소 : 25mg/kg 이하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6가크롬 : 5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합성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